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7가단517984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768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7가단5179849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강현준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주식회사

4. D

5. E

6. F

7.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손도영, 제갈철

변론 종결 2019. 9. 25.

판결 선고 2019. 10. 3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431,790원 및 그 중 141,585,853원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E와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78,696,5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G은 원고에게 178,696,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5. 3.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36,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5. 3. 12.부터 2016. 3. 1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5. 3. 16.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H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4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2.

1.부터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0%이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7. 3. 10.로 변경되었다.

3) 피고 B,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D, E, F는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7. 2. 2. 이자연체로 인하여 H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8. 28. H에 대출원리금141,585,853원(= 원금 135,767,492원 + 이자 5,818,3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 A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151,14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비용으로 1,694,797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E의 처분행위

피고 E는 2017. 3. 23. 피고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344,1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 3. 24. 접수 제257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D,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합계 145,431,790원(= 대위변제금 141,585,853원 + 위약금2,151,140원 + 대지급금 1,694,79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1,585,8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8.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145,431,790원의 구상금 채권이 2017. 8. 28.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이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2015. 3. 12. 체결되어 있었고, 2017. 2. 2. 주채무자인 피고 A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7. 8. 28. H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 E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손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 E의 채무초과 여부

가) 피고 E의 적극재산 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84,414,83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3,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금액
1	제1부동산	10,019,000원
2	제2부동산	195,671,700원 ¹⁾
3	제3부동산	100,000,000원
4	제4부동산	136,000,000원
5	제5부동산	115,000,000원 ²⁾
6	원주시 J아파트 K호	425,000,000원
7	원주시 L 전 2,698㎡ 중 28/77 지분 ³⁾	3,862,068원
8	원주시 M 임야 1,299㎡ 중 28/77 지분	3,862,068원
	합계	989,414,836원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발생할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 141,585,853원도 피고 E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갑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P에 대하여 100,000,000원, H에 대하여 61,347,000원 및 68,800,000원, Q조합(이하 'Q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53,000,000원 및 440,000,000원, R조합에 대하여 290,000,000원, S에 대하여 191,210,000원 합계 1,345,942,853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E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을 피고 G에게 매각한 것은 그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E 및 수익자인 피고 G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 G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G은, 자신의 남편인 T가 2013. 6. 18. 피고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고,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 D의 부인인 피고 E와 T의 부인인 피고 G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G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참조), 피고 G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을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G이 피고 E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 채권자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참조), 이때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이 합계 351,000,000원(= 제3부동산 100,000,000원 + 제4부동산 136,000,000원 + 제5부동산 11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 13,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Q조합,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는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Q조합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4.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전지방법원 U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각 말소된 사실, 위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아래 표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접수일	등기말소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
제3부동산	2014. 11. 18.	2017. 4. 17.	Q조합	68,900,000원	53,283,796원
제4부동산	2014. 11. 3.	2018. 9. 18.	H	86,400,000원	62,866,687원
제5부동산	2014. 10. 17.	2018. 10. 2.	H	77,040,000원	56,152,982원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78,696,535원(= 351,000,000원 - 53,283,796원 - 62,866,687원 - 56,152,982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145,431,790원 및 그 중 141,585,853원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7.9.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인 2019. 9. 25.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액187,597,857원)의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78,696,5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G은 위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1) 제1, 2부동산은 2019. 3. 7. 기준 시가이나, 2016. 8. 10. 당시에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2) 제3, 4, 5부동산은 2017. 12. 13. 기준 시가이나, 2016. 8. 10. 당시에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순번 7, 8번 각 토지는 E가 2007. 2. 9. N의 14/77 지분(2006. 1. 20. 공매), 2007. 2. 12. 0
14/77 지분(2006. 11. 7. 공매)을각 취득하였다.